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9. 28 선고 2020가단10104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동

담당변호사 이병호

피 고 주식회사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경

담당변호사 박재홍, 강지운, 이우규, 최민석

변 론 종 결 2021. 8. 17.

판 결 선 고 2021. 9.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와 E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1. 1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2019. 12. 6. 접수 제3077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7. 24. E에게 만기를 2022. 7. 15., 약정이자를 16.9%, 지연이자를 19.9%, 상환방식을 만기일시 상환으로 정하여 75,000,000원을 대출하여 주었다.

나. 한편 E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2019. 11. 11.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중부산지소 2019. 12. 6. 접수 제30772호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E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차전169745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9. 11. 25.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E은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6.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다.

E은 2019. 12. 11.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0. 2. 12.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272293호).[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내지 갑 4호증, 갑 12호증, 을 18호증의 1 내지 을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쌍방의 주장 요지

가. 원고

E은 자신이 소유한 재산 중 실질적으로 가치가 있는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과 부산 동래구 F 대 132.9㎡ 및 지상 내제조표G 근린생활시설, 주택 중 1/2 지분(이하 위 F 토지와 지상 건물 중 1/2지분을 ‘이 사건 F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2019. 11. 11.과 2019. 11. 27. 연속하여 처분함으로써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E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E은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고, 설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를 알지 못하여 선의였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E에 대한 대출금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미 성립하여 있었고, 다만 당시에는 그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해행위라고 주장되는 법률행위 당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는 데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으므로(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다11494 판결 참조), 원고의 대출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E의 무자력 내지 채무초과 상태 여부

(1) 이 사건 매매계약과 이 사건 F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일련의 하나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는, E이 자신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과 이 사건 F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꿈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가 된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이 사건 매매계약과 이 사건 F 부동산의 처분행위가 일련의 행위로서 하나의 행위에 해당하여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인바,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들을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련의 행위를 일괄하여 그 전체의 사해성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각 행위마다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385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을 7호증의 1, 2, 을 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은 2019. 11. 27. H과 사이에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F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 위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F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I가 근저당권자로 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나, 매매계약 이후인 2019. 12. 19.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F 부동산의 매매계약 체결일이 이 사건 매매계약일과 사이에 2주 남짓한 간격이 있고, 동일한 기회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도 아닌 점, 처분의 상대방이 다른 점,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근저당권자도 다르고 공동근저당권으로 설정된 것도 아닌 점, 이 사건 F 부동산의 매수인인 H과 채무자인 E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 점,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매매계약만을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F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일련의 행위로서 하나의 행위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 사건 F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과는 독립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자력을 초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나아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E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에 관하여 보건대, 갑 8, 9호증, 갑 16호증의 1, 2, 갑 18호증의 1 내지 3, 갑 20호증, 을 6호증 내지 을 8호증, 을 10, 13호증, 을 17호증 내지 을 22호증, 을 24호증의 1, 을 26, 2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J 주식회사, 국토교통부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K단체장에 대한 2021. 8. 12.자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E의 적극재산으로는 시가 180,000,000원 상당의 부산 북구 L아파트 M호(이하 '이 사건 L 아파트'라고 한다), 시가 365,000,000원 상당의 부산 연제구 N아파트 O호(이하 '이 사건 N 아파트'라고 한다), 시가 330,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F 부동산, 시가 15,360,000원 상당의 맥스크루즈 자동차(차량번호 1 생략), K단체에 대한 공제계약 해지환급금 합계 15,454,500원 등 합계

905,814,500원(=180,000,000원+365,000,000원+330,000,000원+15,360,000원+15,454,500원)

이 있었고,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E의 소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P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와 이 사건 L 아파트의 1순위 근저당권자인 Q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합계 299,771,000원, 신용카드 채무 15,091,000원,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무 7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0. 16.부터 2019. 11. 11.까지 27일간 연 16.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937,602원(=75,000,000원×0.169×27일/365일, 원 미만 버림), 주식회사 I에 대한 대출금채무 100,000,000원, R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채무 67,000,000원, J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채무 23,346,327원, 부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대출금채무 11,162,500원, 이 사건 L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10,000,000원, 이 사건 N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270,000,000원, 주택, 토지에 대한 재산세 합계 677,890원 등 합계

872,986,319원(=299,771,000원+15,091,000원+75,000,000원+937,602원+100,000,000원+67,000,000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E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하더라도 합계 905,814,500원 상당의 적극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은 872,986,319원에 불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E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E이 채무초과상태였거나 채무초과상태를 초래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범

별지

부동산 목록

1. 부산광역시 서구
- 대 138.8㎡
2. 부산광역시 서구
-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서구
- 위 지상
-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라브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
- 1층 76.86㎡
- 2층 63.38㎡
- 3층 44.19㎡
- 지하 22.58㎡

